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부쳐.



김영기 팀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1. 들어가는 말

친환경농업육성법은 1997년도에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2001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5년 만에 개정 되는 셈입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함)의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5년),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별칙으로 총 5장 2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고, 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육성법 개정은 정부(농림부 친환경농업과) 및 이철우 의원, 김명주 의원, 이낙연 의원, 강기갑 의원 등 4인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토론을 거

쳐 통합된 1개의 법률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제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정의, 친환경농산물의 분류 간소화, 인증신청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 등의 인증신청자격의 제한, 생산자 수입자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신청자 범위확대, 인증유효기간 연장,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등입니다.

이글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된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 개정 법률안이 환경농업 실천 농민, 유통인, 소비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보고, 보완되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2.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

### 가. 육성법 개정 이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2003년도 : 2.1% → 2004년도 : 2.5% → 2005년도 : 3.5% → 2010년도 : 10%(예상-농림부)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은 일반친환경, 저농약, 무

농약, 전환기유기, 유기 5단계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고, 법령미비, 관리소홀로 해마다 발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사고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개정이유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매년 대폭으로 늘어나는 수입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관리방안과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가공, 유통 등의 관리(규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나. 친환경농업의 정의 재정립

현재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 친환경농산물 종류의 간소화

당초에 5단계(일반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전환

기유기, 유기)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하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관리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하고,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을 무농약으로 분류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분 류	주요 인증기준	개정안
유기농산물	○ 3년 이상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 농산물	○ 합성농약 : 일체 사용하지 않음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 화학비료 :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사용 ○ 합성농약 : 기준량의 1/2 이하(제조제 미사용)	저농약 농산물
일반친환경농산물	○ 인증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삭제

다만, 저농약은 친환경농업 육성이 지나치게 저농약농산물의 확대에 치우쳐 있고, 무농약과 유기농산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단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수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수만을 인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및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인증신청자 제한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인증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 및 인증취소자에게 1년간 인증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해, 민간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증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부적합 생산자 및 유통인에게는 ‘1년 이상’ 인증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자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친환경유기농업의 철학을 담보하기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생산자와 수입자뿐만 아니라 유통시 재포장(소분)이 가능토록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바.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이 짧아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단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사.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유통과정에서의 허위광고행위(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그와 같이 표시를 한 농산물을 알고 당해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및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간다면 소비자,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표시사항(유사외국어 사용금지

등)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수입유기농산물 관리(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육성법 개정에 더 바라는 것은…….

가. 가칭 친환경농업민간진흥센터 법정 법인화

그 동안 친환경유기농업은 정부의 관심 없이 민간의 자생적인 운동으로 발생 성장되어, 다양한 농업방식과 실천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환경유기농업이 광범위하게 정착 육성되기 위해서는 환경농업을 이끌어온 민간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가시적인 일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만,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제도의 틀 안에서 전향적으로 북돋워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발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농업민간진흥센터는 다양한 환경농업 민간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정책 수용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단체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민간 정책파트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 유기농자재 관리방안

그동안 난립해온 친환경농자재(유기농자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영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친환경 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에 따른 자재의 허용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미량원소복합비료, 4종 복합비료 등으로 등록되어 있

는데, 제조과정에서 유기용매, 합성계면활성제 등 유기농업에 금지된 물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거나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는 등 생산능가가 자재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잘못된 자재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자재'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유기농에 사용하는 자재를 관리기 위한 인증 등의 제도가 없는데다, 자재의 기준을 정해놓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아닌 다른 법(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에 단순히 등록된 것을 '친환경자재'로 여기다보니, 자재의 수요자인 농민이 불투명한 자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비의도적 인증기준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생산하였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농산물이라는 결과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욱 절실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증' 보다는 '검토'가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증'은 법적기준과 절차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새로운 제도마련이 뒤따라야하고, 유사한 자재간의 제품(브랜드)의 신생 및 생산중단이 빈번하고(비료관리법 및 농약관리법의 영역임), 대다수 업체의 영세성으로 실제 인증관리(철저한 기록, 자료관리 등)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허용가능 제품의 목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관리는 법적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환농연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검토'가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다.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이양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 국가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이 전

체 인증의 90%(무농약 27%, 저농약 66%—2005.12.31현재)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인증(20여개 유기23%, 무농약 36% 저농약 42%—2005.12.31 현재)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인증의 독점적 구조를 구축하고 유기농산물 관리의 획일화,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이양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인증기관 역량부족의 이유로 그 시기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량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민간인증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육성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그 역량이 무엇인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면 당장 이양하지 않더라도 언제 이양할 것인지에(5년 이상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대한 경과조치를 육성법의 부칙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 소비촉진 및 유통 가공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촉진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유통·가공 등도 관리(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마. 무농약·유기농업으로의 전환독려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그 참여하는 농민의 수가 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이 저농약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양적인 성장 독려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 계획상 2010년도에는 저농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무농약·유기농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추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4. 나가며

이번 육성법 개정은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4.18)에 5개 발의안이 상정되어 검토와 토론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4.19)에 회부되어 1개의 대안법률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조만간에 열릴 임시국회의 본회의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의가 바뀌었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의 개념이 “적절한 사용”에서 “최소 또는 미사용”으로 관행농업과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유기농업의 인식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간담회 및 토론회, 많은 의견을 모으고 정리해서,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제안하고 설득했지만 일정 부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했고, ‘친환경’, ‘유기’라는 말이 생소한 했던 때를 잊을 만큼 친환경유기농업의 인식과 그 저변이 높아지고 넓어졌습니다. 나아가서는 정부도 소매를 걷어 붙이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은 민간차원의 스스로의 유기농업운동이었던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서도 민간부문의 의견이 좀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성장 발전하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농기협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농기협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농기협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